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5년 7월 일

발의자 : 박선미의원

1. 제안이유

- 가.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의 인용 방식과 표기 등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시민이 알기 쉽게 순화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연가일수표와 일치하도록 개정함 (안 제15조제1항).
- 나. 그 밖에 ‘수행함에 있어서’를 ‘수행할 때’로 바꾸는 등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 법 조문과 숫자 사이의 띄어쓰기를 삭제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비함(안 제4조, 제6조, 제11조, 제24조 등).

3. 개정조례안: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없음

5.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후단 중 “법 제73조의2 제1항”을 “법 제73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수행함에 있어서”를 “수행할 때”로 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3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22조 중 “별표2, 별표3”을 “별표 2, 별표 3”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제5호 중 “등에 따른 폐직·과원”을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으로 한다.

제26조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제2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및 제3호 중 “이내”를 각각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10년이상”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1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28조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근무기강확립) ①·② (생략)</p> <p>③ 의장은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p> <p>1. 2. (생략)</p> <p>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u>법 제73조의2 제1항</u>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p> <p>4. 5. (생략)</p>	<p>제4조(근무기강확립)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p> <p><u>법 제73조의2제1항</u>----- ----- --.</p> <p>4. 5. (현행과 같음)</p>
<p>제6조(친절·공정) ①·② (생략)</p> <p>③ 공무원은 직무를 <u>수행함에 있어서</u>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제6조(친절·공정)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수행할 때</u> ----- -----.</p>
<p>제11조(파견근무) ①·② (생략)</p> <p>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p>	<p>제11조(파견근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5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 ~ ④ (생략)

제22조(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
 -----.

 -----.

제15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 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3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

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 별표3에 의한 공무원 및 그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 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제2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③ (생략)

④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공무원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제24조(연가일수의 공제) ①·② (생략)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 4. (생략)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의장으로부터

---별표 2, 별표 3-----

제2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없으면 -----
-----.

제24조(연가일수의 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
-----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6. (생략)

④·⑤ (생략)

제26조(공가)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 10. (생략)

제27조(특별휴가) ① ~ ④ (생략)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한다.

1. ~ 3. (생략)

⑥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6.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26조(공가) -----

-----.

1. ~ 4. (현행과 같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6. ~ 10. (현행과 같음)

제27조(특별휴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각호-----
-----.

1. ~ 3. (현행과 같음)

⑥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

2. ~ 4. (생략)

⑬ ~ ⑳ (생략)

제28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

1. -----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2. ~ 4. (현행과 같음)

⑬ ~ ⑳ (현행과 같음)

제28조(휴가기간의 초과) -- 조례에서 -----
-----.